

2013년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지침



2012. 11.



전북대학교
(사무국 재무과)

차 례

I.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	1
1. 대내·외 여건	1
2. 재정운용 여건	1
II.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3
1. 예산편성 기본방향	3
2. 예산편성 기본지침	4
III. 사업유형별 지침	7
1. 기본사업비	7
2. 운영비	9
3. 실험·실습비	11
4. 주요사업비	11
5. 시설사업비	12
6. 보조금	12
7. 수입대체경비	12
8. 예비비	13
9. 이월사업비	13
IV.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14
1. 세입 과목구분	14
2. 세출 과목구분	15

※ 참고자료 : 국유재산 활용수입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I.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여건

- 반값 등록금 이슈와 등록금 반환소송
 - 반값 등록금의 사회적인 이슈 지속
 - 서울대 등 8개 대학 등록금 반환 항소심 진행

- 교내 등록금 반환소송과 등록금 인하 차액 반환
 - 졸업생 및 휴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소송 제기
 - 복학생들의 기 납부금액과의 차액 장학금 지급(2012.10월 결정)

2. 재정운용 여건

① 세입·세출

- 세입은 경제성장둔화등으로 감소 예상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제회복 지연과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로 등록금 인상 어려움
 - '12년도 등록금 인하로 인한 세계이월금 대폭 감소
 - ※ '09 ~ '11년 동결, '12년 5.6%인하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감소

□ 세출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증가 예상

- 공무원 보수의 2.8%인상에 따라 기성회직 인건비 상승
- 지속적인 대학 경쟁력 제고에 따른 투자 확대 발생
 - 취업률, 국제화, 연구력 향상
 - 각종 연구사업의 대응투자 확대 등
- 각종 실험실습기자재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2 재정수지

- 안정적 재정운용 및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요구
-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 도모
- 새로운 재원 발굴을 통한 학교재정확충 노력 강화
- 낭비성, 일회성 행사 지양으로 대학 구성원의 예산절감노력 고취

II.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Vision 2020+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세계 100대 대학, 전국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1. 등록금 3년 연속 동결 및 '12년 인하(5.6%)에 따른 초긴축재정 운영

- 예산절감 노력,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내실화 도모
- 타성적·관행적 추진사업 전면 재검토 → 비효율성 제거

※ 2012년도 주요사업비 : 2011년도 집행 성과평가결과 반영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각종 평가지표 향상 사업 집중 투자

- 학생장학금 수혜범위 지속적인 확대 노력 * 반값 등록금 실현
- 취업률 향상 및 학생지원 사업,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 강화
- 대학 특성화 관련 사업 집중 지원
- 학생실험실습비 전년도 수준 유지 * 실습기자재비(국고)는 별도 배정

3. 교육환경개선 및 수요자 복지 지원

-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 교수·학생·직원 복지 및 제도 개선 추진

4.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각종 수당 편법 신설 또는 과다 편성 금지, 기타 부당 집행사례 등
- 예산낭비 사례, 생활관 회계, 부외계좌 등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12.2.27) 반영

5. 예산편성 과정에 구성원 참여확대

- 예산 요구·편성 단계에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
- 심의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 확대

2.

예산편성 기본지침

1] 세입부문

회 비

- 2012학년도 등록금(기성회비) 적용
 - * 2012학년도 등록금 : 5.6%인하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12.1.26) 결정)
- 재학생수 : 2012.11.1 기준 [1학년은 2013학년도 입학(모집) 정원]
- 등록률 : 2012학년도 실제 등록률 적용

이월금

- 전년대비 세계잉여금 감소('11 : 120억원 → '12 : 87억원)
 - ※ 사고이월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음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타 회계의 보조금 등 계상
 - ※ 모든 수입은 기성회회계에 계상하여 관리(부외계좌 관리 금지)
 - * 특히 부속기관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함

잡수입

- 이자 수입, 과년도 수입, 타 회계의 공공요금 부담금, 기타수입 등 계상

□ 수입대체경비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계절수업 수업료, 공개강좌수강료, 생활관비, 어학강좌, 평생교육강좌 등 계상

2] 세출부문

- 세출예산 편성기준 : 2012.12. 1 현원
- 국고지원 부족분(강의료, 공공요금, 연료비, 용역비 등) 우선 투자
- 학생 실험·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험·실습비를 대학 운영비와 분리 별도 편성 ※ 운영비 및 실험실습비는 Ceiling으로 배분하여 기관 자율 편성
- 사업성경비는 성과와 예산 간 연계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주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 주요사업비는 사업부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총액으로 배정하여 계상
-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 권익위 권고 및 감사원 지적사항 준수
- 전년도 사고이월 분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함
※ 과년도 지출로 표기 - 회계프로그램 상에서만 예산배정 입력
- 사업의 성과분석 및 본부 주관부서에서 표준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부 사업주관 부서에 예산을 총괄 배정하여 관리
 - 교육과정개편, 국내·외연구교수 선발 지원업무 : 교무처에 총괄 배정
 - 기획, 평가, 특성화 지원업무 : 기획처에 총괄 배정
 - 연구소관리, 학술활동 및 학술대회지원, 특별사업단 대응투자 등 연구기반 조성업무 등 : 산학협력단에 총괄 배정
 - 입학관련 지원업무 : 입학본부에 총괄 배정

- 취업활동 및 고시반 운영 지원 사업 : 취업지원본부에 총괄 배정
- 신축건물 비품, 멀티기자재 확충사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 사무국에 총괄 배정 집중 관리
- * 단, 기존 노후비품 교체, 각 기관에서 소규모 추진하는 사업 등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체 배정
- 산학협력단 출연금, 대응투자연구비는 간접연구경비에서 충당하고 간접연구경비에서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기성회회계에서 수행
 - 각종 사업단(센터)의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비를 계상하되 대응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중복투자나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며, 대응투자예산이 대학사업을 위하여 재투입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기성회 부담 경감 유도
- 보조금은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 시에는 사업 목적대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집행
- 예산 성립 후 목간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며, 무분별한 예산 집행과 편성을 방지

■ 참고사항

- ▶ 대학의 전체 재원을 파악하여 각 부서간 사업간 균형 있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 각 부서의 사업비 예산은 자체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사업의 중요도 및 '10~'12년 실적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예산편성위원회 심의 시 예산집행 주무부서와 각 부서장이 참석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 비품(기자재 포함)은 2013년도 물품수급계획에 반영된 물품에 한하여 계상하되 교체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을 원칙으로 함
- ▶ 안전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간접경비에서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 세수증대, 세출절감 등 대학의 재정확충 및 경비절약에 기여한 경우에는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 2013년도 기성회회계 예산편성 후 15일 이내에 세출예산 과목 및 내역을 포함한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
- ▶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 및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 준용

Ⅲ. 사업유형별 지침

1. 기본사업비

① 인건비

교원 및 일반직 연구보조비

* 지급단가 및 횟수 : 전년도와 동일 계상

기성회직 보수

※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2013년도 국가공무원 보수에 준하되 본교와 전국대학 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지부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하여 책정

○ 급 여

- 1종(사무원, 사역원) : 추후 노사 임금협상 결과 반영

* 직급제 전환 봉급책정표 기준으로 산출

- 2종(위생원) : 추후 노사 임금협상 결과 반영

○ 기성회 제 수당 : '12년도 수준으로 유지

○ 복리후생비 : 일반회계 지급단가 기준 적용

○ 보상금 및 퇴직충당금 : 법정부담금 적용

□ 객원 및 초빙교수 등

○ 지급단가

- 객원교수 : 전년대비 80천원/월 인상 * 호봉제 적용
- 초빙교수 및 석좌교수 : 전년대비 동결 계상
-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충당금 반영, 연차적 확보계획에 따라 적정 퇴직적립금 계상

□ 계약직 보수

- ※ 인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할 시 관련부서(총무과, 재무과)와 사전 협의 및 기성회 이사회 의결**
- *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의 소요경비 증액 억제

○ 편성방법

-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기관(부서)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채용하는 기존의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 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원의 보수 및 4대보험료,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충당금 등은 수입대체경비 운영기관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수입대체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 기성회회계 외 타 회계에서 채용 직원, 전문직종(국제교류부, 홍보부, 기초교양교육원, 취업지원본부, 정보전산원, 공동실험실습관 등)에 대한 계약직 보수(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는 자체 예산에 편성 지급
- 이외의 계약직(단시간근로자 포함)은 기성회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음. 다만, 특수한 사업 목적이나 업무를 위하여 사회보장보험 적용 제외기간 내(최대 월 60시간미만)에서 근로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급단가 : 국가공무원 보수 및 물가인상률 등 반영

□ 일용잡급

- 2013년도 사업 종목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의거 노임단가 기준적용

※ 인건비 산출 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적용 기준

☞ 법정요율 적용(학교부담금)

- 건강보험료 2.9%, 국민연금보험료 4.5%
- 고용보험료* 1.2%, 산재보험료* 0.645% * 사업장별·인원별에 따라 변동 있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퇴직충당금 : 보수 총액의×1/12

□ 시간강사 강의료(국고부족분)

☞ 강사료는 국고와 기성회회계에서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

- 강사료 지급단가 : 전년대비 10천원 인상

2 장학금

- 학생수혜경비인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
 - 목적장학금(학비감면, 근로 등)
 - * 장학금 종별로 구분 계상
 - 외국인학생장학금
 - 자연계 교수 연구보조 대학원생 장학금
 - 파견교환학생 및 GLP장학금(국제교류부)

3 도서비

- 전액 도서 확충사업비로 계상
- 도서 확충사업비는 국내·외 학술지 등 도서국입비와 이에 따른 부대경비로 도서관에 일괄 편성
-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구입비 포함

2.

운영비

☞ 기본운영경비는 2012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

※ 각종 회의(위원회, 업무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는 통합·축소 및 간소화 운용 : 과별 워크숍 등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인 회의 등은 가급적 억제(예산 미반영)

※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등기 및 소송료, 감정료, 업무위탁대가(수임료) 및 사례금의 실비를 계상하고 본 대학 법률지원센터 적극 활용

1 본부 및 부속기관 운영비

- 본부 및 부속기관 : 2012년도 운영비 총액에서 산출 편성
 - * 기초교양교육원, 고창캠퍼스, 학군단 후보생 증가분 반영
- ※ 별도 회계 운용기관(산학협력단, 발전지원재단)은 자체 운영비에서 총당

2 대학운영비

- 전년도 기준 단가 적용하되, 2012년도 운영비 총액에서 산출 편성
- 대학운영비는 환경개선 등에 우선 투자하고 소모성 경비 최대 억제 편성
 - 업무추진비는 최소금액 계상
 - 자산취득비는 운영비에 반드시 의무 계상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 : 노후화된 강의실 환경개선과 신입교수, 노후 책·결상 등 비품구입비 편성
-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1식당 6,000원 편성
 - * '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배정기준〉 * 기준단가 전년도와 동일

- ▶ 대학 기본경비 : 12,000천원
- ▶ 교직원 경비(1인당) : 250천원
- ▶ 학생 경비(1인당) : 인원수는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생 포함하여 아래 계열별 기준 단가 적용
 - * 공학 66천원, 이학 63천원, 인문·사회 52천원, 예능 67천원, 의·치·수의 68천원
 - * 법학전문대학원 52천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93천원
- ▶ 건물유지비(m²) : 토요일 제외
 - * 강의실 활용률 50% 이상(m²당) : 800원
 - * 강의실 활용률 40% 이상 50%미만(m²당) : 630원
 - * 강의실 활용률 40% 미만(m²당) : 460원
- ▶ 학부(과) 운영비 : 교수 수, 입학정원, 전공 수에 따라 산출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개정 사항 반영

※ 관행적 임의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편성 금지

3. 실험·실습비

- 전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의·치학전문대학원생은 체재 개편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대학원생 기준으로 인상 차액 분을 특별 지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전년도 수준 지원
- 공동활용이 가능한 고가·정밀기자재의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 증대
- 실험·실습비는 교육과정 및 수업 등 각종 교육활동에 직접 수반되는 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 또는 사용 불가

〈배정기준〉 * 기준단가 전년도와 동일

- ▶ 공학계열 : 120천원
- ▶ 이학계열 : 114천원
- ▶ 인문 · 사회계열 : 38천원
- ▶ 예능계열 : 123천원
- ▶ 의 · 치 · 수의학계열 : 138천원
- ▶ 법학전문대학원 : 204천원, 의·치의학전문대학원 : 275천원

* 전문대학원 체제안정을 위하여 별도 지원분 계상

4. 주요사업비

- 주요사업비는 당초 각 기관(부서)에서 요구한 사업 중 기획위원회 주요사업 심사 소위원회에서 실질 심사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타 목적으로 집행 사용을 불허

※ 주요사업 요구 및 반영내역 비고란의 필수반영사업 확인 계상

5.

시설사업비

- 전년도 수준에 일반회계 시설 개·보수비 부족분 일부를 합산하여 반영하되, 공종별로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토록 함

6.

보조금

- 등록금 인하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여 교육역량강화 사업 중 기성회 회계와 사업 연계가 가능한 일부 사업(시설사업비, 강의실 환경개선 사업, 장학금 등)을 반영
 - ☞ 교육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은 지원 규모 미확정으로 추후 예산각목명세서 작성 시 해당 보조금 지출에 의거 가능한 사업별로 발굴하여 조정 계상 예정
 - ※ 각종 국고보조금 대응투자비를 계상하되, 대응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기준을 설정하여 중복투자나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며, 대응투자예산이 공공요금, 기초실습장비 및 실습재료비 등 대학을 위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대응자금 활용계획서,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받아 예산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대응투자 재원은 해당부서에서 부담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회 회계 지원 불가)

7.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는 1:1 대응경비로 세입·세출액 동일 계상
 - 계절수업, 정보화교육, 생활관, 중등교원연수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공개강좌 등 수입대체경비는 모든 수입금이 기성회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별도 관리하는 자금이 없도록 함
 - * 생활관 예산은 '12년도부터 기성회회계 편성
- ☞ 2012년 국립학교 세입세출 작성지침('11.5.20, 교육과학기술부)

- 총 수입금의 20% 이상을 “출연금” 과목(공공요금으로 사용)에 계상
 - * 출연금(공공요금) : 강좌운영 총 세입의 25% , 각종 경시대회 총 세입의 20%, 생활관 : 실 소요액
 - 국유재산 활용수입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수입대체경비 인건비 및 운영비는 다음 기준에 의거 편성·집행
- 보 수 : 계약직 등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위 3의 나항, 2)의 가)호 (1)목 인건비 기준에 의거 계상(임의적 보수 책정 불허)
 - ☞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보수, 4대 보험료, 퇴직충당금)는 자체 편성
 - 수 당 : 대학입시수당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책정
 - 강사료 : 국고 강사료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강사료는 따로 정함
 - 업무추진비 : 최소경비 계상
 - ※ 관행적 임의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 편성 금지

8.

예비비

- 세수 부족으로 미편성

9.

이월사업비

-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 후 편성

IV.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

1. 세입 과목구분

과 목		현 행 내 역	비 고
회 비	회 비	1.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2. 독지가의 찬조금	회비수입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적용 (예, 3년 평균 등록학생 수 등)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타회계의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각종 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 등	
잡수입	잡수입	1. 이자수입 2. 과년도수입 3. 기타수입	
세입총계			

2.

세출 과목구분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인건비	보 수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포함)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과목에 편성할 수 없음
	수 당	강사수당	
운영비	연구보조비	1.법령, 훈령, 학칙, 회칙 또는 학교자체규정에 공무원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기성회 직원 급여 이외에 월/분기/반기/연액 등으로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 일체 2.시간강사 교재연구보조비 3.교원 및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국고연구보조비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일 용 잡 급	기성회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학 교 운영비	【일반수용비】 1.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가.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나.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재물조사대상물품은 자산취득비목에 계상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5.간행물 등의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p> <p>6.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p> <p>7.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가.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 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나.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등 다.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라.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직송료(버스회수권대)</p> <p>8.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가.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나.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다.현상모집의 상금, 학교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p> <p>9.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p> <p>【공공요금 제세】</p> <p>1.공공요금 가.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나.철도화물 운송요금 다.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p>	<p>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p> <p>철도운송료는 공공요금 비목에 계상</p> <p>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2.제 세 가.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나.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다.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금 및 기타 보관금 라.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환부금</p> <p>【피복비】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p> <p>【급량비】 1. 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경비 가.주식비 나.부식비 다.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소모품구입비 등</p> <p>【특근매식비】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차 및 각종훈련실습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매식비</p> <p>【운영수당】 1.시험수당, 위원회참석수당 2.일·숙직수당 3.자체교육강사수당</p> <p>【임차료】 1.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4.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연료비】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p> <p>【시설장비유지비】 1.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등 포함) 유지비 3.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p> <p>【차량선택비】 1.차량 및 선택 유류대 2.차량정비 및 선택정비 유지비 3.차량 소모품비, 선택용품 및 선구비 4.자가운전제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p> <p>【재료비】 1.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나.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택,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p>	<p>이륜차중 1,200cc 이상은 차량·선택비목에 계상</p> <p>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p> <p>물품관리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목에, 수선에 사용되는</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여 비	<p>2.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p> <p>3.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p> <p>4.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p> <p>5.사료구입비</p> <p>【학생활동지원】</p> <p>1.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p> <p>【학교행사지원】</p> <p>1.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지원</p> <p>【기타운영비】</p> <p>가.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p> <p>나.공상치료비</p> <p>【국내여비】</p> <p>1.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p> <p>2.학교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p> <p>3.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여비</p>	<p>부속품등은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p> <p>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p> <p>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경 상 이전비	업 무 추진비	<p>【국외여비】</p> <p>1.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2.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p> <p>【외빈초청여비】</p> <p>외빈초청에 따른 여비</p> <p>1.학교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가.접대경비 나.해외출장 지원경비 다.정례회의 경비 라.각종행사 및 학생지도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p>	
	복 리 후생비	<p>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p> <p>1.정액급식비 2.가계보조비 3.효도휴가비 4.연가보상비 5.체력단련비</p>	
	연 구 개발비	<p>1.학교사업의 지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전산조직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p>	
	보상금	<p>【보상금】</p> <p>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장학금 3.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p>	<p>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p> <p>교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4.기성회직 법정보험 부담금	
	【포상금등】	
	1.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대상인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수인 경우에 한함)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해외파견교직원의 학자금	
퇴 직 충당금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배상금	1.손해배상금 2.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징발보상금 4.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출연금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차입금 이 자	1.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2.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자본지 출경비	토 지 매입비	
	1.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시설비	
	1.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전력소모 및 전신전환,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3.토지정비공사비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시 설 부대비	<p>4.조립, 육림에 필요한 경비</p> <p>5.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비등 기타 제경비</p> <p>6.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p> <p>7.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p> <p>1.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p> <p>2.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p> <p>3.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p> <p>4.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p> <p>5.대수선 또는 재산취득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p> <p>가.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p> <p>나.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p> <p>다.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p> <p>라.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p> <p>마.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p> <p>바.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사.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아.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자 산 취득비	1.학교교육에 직접 수요되는 건물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등의 취득비 2.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3.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 5.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상환금 1.국내차입금의 상환금 2.해외차입금의 상환금	
과년도 지 출	과년도 지 출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금
세출총계		

<참고자료>

국유재산 활용수입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구 분		항 목	편성 및 집행 기준			비 고
			공공요금	적립금	기타	
일반회계	국고 일반	세입	○ 면허료 및 수수료			증명 발급 수수료
			○ 관유물 대여료			토지, 건물 대여료
			○ 고정자산 매각대			건물 등 매각 수입
			○ 토지 등 매각대			토지, 조경수 매각 수입
			○ 재고자산 매각대			불용품, 폐품 매각대
	국고 수입 대체 경비	세입	○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수입			기자재 사용 수입
			○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교내 시설 사용 수입
			○ 주차관리 수입			주차시설 사용 수입
			○ 생산물 매각 수입			농산물, 가축·원유
			○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세출	○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수입	30% 이내	-	-	공동실험실습관
		○ 대학시설 운영·대여 수입	30% 이내	-	-	학생과
		○ 주차관리 수입	30% 이내	30% 이내	-	총무과
		○ 생산물 매각 수입	30% 이내	-	-	농생대
		○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10% 이내	-	-	
기성회계	세입	○ 대학시설이용 강제운영 수입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
		○ 소비조합 수입				소비조합 운영 수입
		○ 자판기운영 수입				자판기 운영 수입
		○ 기숙사 수입				기숙사 수입
		○ 대학행사 관리·운영 수입				각종 경시대회, 인증시험
		○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통학버스요금 등
		○ 각종 기금				기부금, 부담금
	세출	○ 대학시설이용 강제운영 수입	20% 이내	20% 이내	-	학사관리과, 정보전산원, 특수대학원, 평생교육원, 언어교육원
		○ 소비조합 수입	20% 이내	20% 이내	-	소비조합
		○ 자판기운영 수입	10% 이내	-	-	소비조합
		○ 기숙사 수입	실소요액	20% 이내	-	생활관
		○ 대학행사 관리·운영 수입	20% 이내	-	-	예술대
		○ 기타용역제공 등 수입	20% 이내	-	-	
○ 각종 기금	-	-	-			